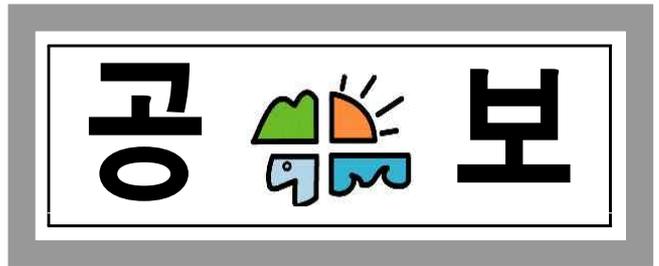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716호 2012년 8월 8일(수)

공 고

-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 송달 공고 2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공시송달 공고

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공고(의견제출)기간 : 2012. 8. 8. ~ 2012. 8. 23. (16일간)
2. 공고장소 :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,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3. 공시송달 내용

가. 처분제목		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	
나. 대상자	성 명	① 김정식(68072*-1*****)	
		② 최성환(55052*-1*****)	
	반송주소	① 속초시 미시령로3337번길 7, 10*동 10*호(교동, 대명늘푸른아파트)	
		② 속초시 영금정로 7-(동명동)	
다. 처분의 원인된 사실		건축법 제14조 위반	
라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① 이행강제금 부과(금497,950원)	
		② 이행강제금 부과(금714,090원)	
		위치	① 속초시 영랑동 16-1번지 ② 속초시 영랑동 1-6번지
바. 처분근거		건축법 제80조	

4. 기타사항
 - 가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나.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- 다.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: 강원도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**【☎033-639-2457】**

2012. 8. 8.

속 초 시 장

